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처리

2015.06.22. 제출된 취득세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 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역

○ 청 구 인 : 주식회사 *********

○ 과세물건 : 강남구 **********

○ 청구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등기 중과배제

○ 경정총액 : 48,000,000원

2. 경정내역 : 2015/5신**********

세 목	당 초	취소(경정)	차 액	비 고
등 록 면 허 세	60,000,000	40,000,000	20,000,000	
지 방 교 육 세	12,000,000	8,000,000	4,000,000	
합 계	72,000,000	48,000,000	24,000,000	

3. 검토 및 처리

○ 청구인은 2015.05.27.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06.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기납부세액 중 중과분에 대하여 일부 부과취소처리 하고자 합니다.

4.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1항

-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1. 부과취소(경정)결정서 1부
2. 등록면허세(등록)부과취소내역서 1부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한필	법인2팀장	윤미경	세무1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06/22 문경수

협조자

시행 세무1과-12488 ( ) 접수 ( )

우 135-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84 /전송 02-3423-8893 / pandahp@gangnam.go.kr / 부분공개(6)